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0시 13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관리위탁의 해지	3

관리위탁의 해지

2014.04.17 조회수 548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8
담당부서	해양항만레저과
상위법령	수상레저 안전법
조례	여수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제23조
유형	2호 - 결정(해제 등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11-12-31
규제시행/폐지일	2011-12-31
규제내용	제23조(관리위탁의 해지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제22조에 따른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.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관리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7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119

Yeosu Web Contents

